

2025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시중 임대료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5. 12. 2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심사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부산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청년임대주택 포함)의 기계약자 및 현재 입주자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부산광역시 내 20개 주택 90호이며, 호실별 전용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용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단위) 주택 단위로 모집하며, 주택 단위로 (예비)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 (모집인원) 입주 포기 및 퇴거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 주택의 3~4배수를 모집(예비 2~3배수 포함)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BMC 청약센터(<http://apply.bmc.busan.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청약신청(매입임대)]
- 1순위와 2·3순위 신청자의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제출 및 (예비)입주자 발표 일정이 상이하며, 2·3순위 신청자의 경우 1순위 신청접수에 따라 공급대상 주택이 마감(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신청접수에 따라 2·3순위 공급대상 주택 재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자격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지되고,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총 90호(호실별 전용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용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 목록' 참고)

주 소		주택명	주택유형	공급호수 (호)	모집인원 (명)	평균 전용면적(m ²)
사하구	낙동대로 137 (괴정동)	대티엑스마트더블유인공지능	오피스텔	4	16	17.68
	장림번영로104번길 10 (장림동)	사하장림엑스마트W 103동	오피스텔	10	30	20.12
연제구	거제대로96번길 39 (거제동)	넘버원빌	도시형 생활주택	4	16	21.67
	시청로 6 (연산동)	더샵시티애비뉴	오피스텔	4	16	23.79
	거제천로230번길 70 (연산동)	웰메이드	오피스텔	12	36	21.73
수영구	감포로 13-5 (광안동)	제이엠하우스	도시형 생활주택 등	3	12	18.74
중구	중앙대로 99 (대창동1가)	중앙역퀸즈W테라스에디션	오피스텔	5	20	28.08
	대교로 133 (중앙동5가)	경보이리스오션 더스타	오피스텔	4	16	20.82
금정구	팔송로39번길 80 (남산동)	모스	다가구주택 등	6	18	21.12
	남산로37번길 5 (남산동)	진우로웰하우스	다세대주택 등	10	30	25.20
	부산대학로64번길 81-5 (장전동)	네버랜드 102	다가구주택	2	8	17.54
부산진구	가야대로552번길 79 (가야동)	가야봄여름가을겨울 102동	오피스텔	3	12	21.88
	서전로9번길 20 (부전동)	혜도인파크에비뉴서면	오피스텔	3	12	20.90
	서면로 10 (부전동)	서면데시앙스튜디오	오피스텔	1	4	22.42
동래구	중앙대로 1453 (온천동)	온천동 유림노르웨이숲 1동	오피스텔	4	16	23.70
동구	범일로90번길 17 (범일동)	범일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	오피스텔	1	4	29.58
	중앙대로 539 (범일동)	서면 베스티움 더 시티	오피스텔	3	12	24.10
	중앙대로 493 (범일동)	범일퀸즈W 에디션	오피스텔	1	4	29.75
해운대구	해운대로 663 (우동)	해운대비스타동원 301동	오피스텔	2	8	27.95
	중동1로17번길 15-11 (우동)	해운대 U-시티오피스텔	오피스텔	8	24	25.50

- 공급호수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은 예비입주자를 포함하는 인원이며, 공급대상 주택별 공급호수에 따라 배수를 달리 적용합니다.
(공급호수 5호 이하 시) 4배수 모집, (공급호수 5호 초과 시) 3배수 모집
- 평균 전용면적(m²)은 공급대상 주택 공급호실의 평균값이며, 전용면적(m²)은 호실별 상이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의 가구, 전자제품 등 비품과 부대시설은 호실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일정



- 2·3순위 공급대상 주택 재안내: 1. 20.(화) 13:00 이후 ※ 1순위 신청접수로 마감된 주택 제외

- 신청접수: (1순위) 1. 12.(월) 10:00 ~ 1. 13.(화) 17:00

(2·3순위) 1. 26.(월) 10:00 ~ 1. 27.(화) 17:00

- 대상자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정되며, 'BMC 청약센터'를 통해 서류제출

(1순위) 1. 26.(월) 10:00 ~ 1. 27.(화) 17:00

(2·3순위) 2. 4.(수) 10:00 ~ 2. 5.(목) 17:00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안내: 제출서류 심사,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조회, 소명절차 등

- 소명대상자에게는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상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구 분	내 용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중 임대료의 40~50% 수준으로 순위에 따라 차등 호실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 목록' 참고 		
	구 분	1순위	2·3순위
	임대조건	시중 임대료의 40% 수준 (임대보증금 100만원)	시중 임대료의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p>※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5회 추가 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p>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한도) 전환 후 월 임대료가 표준 월 임대료의 60% 이상 (증액전환율) 6%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times 6% \div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5,000원 감소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상호 전환율(증액전환율) 및 전환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 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 공통 입주자격: 모집공고일(2025. 12. 29.)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5. 12. 30. ~ 2006. 12. 29.)인 사람
- ② 대학생(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③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단,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졸업·중퇴 학교 인정기준>

■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 ※ 단,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3의 대안학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검정고시 등)
- ※ 중학교, 해외고등학교는 제외

<순위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

■ 순위별 입주자격

순 위		세부 입주자격
1순위	수급자 가구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p> <p>※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5. 12. 30.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p> <p>※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p>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p>「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p> <p>※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p>
	차상위계층 가구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p> <p>※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5. 12. 30.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 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p>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득 및 자산기준

순 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p>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4,317,797원, (2인) 6,024,703원, (3인) 7,626,973원 	<p>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3순위	<p>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4,317,797원 	<p>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가액 25,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신청접수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신청자 →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1순위 또는 3순위 신청자 → 부모 무주택 배점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 분		산정방법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총자산가액	부동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자동차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조회 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및 선박,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자동차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조회 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자동차가액 기준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고

○ 경합 시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항목표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배점항목표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배점항목표(국토교통부훈령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2의2])

적용대상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1순위	①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3점
공 통	②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점
공 통	③ 장애 여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2점 1점
2·3순위	④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 (1인) 2,518,715원, (2인) 3,286,202원, (3인) 3,813,487원	3점
공 통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3점 2점 1점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배점 인정 불가

모집절차

단계	일정	내용
신청접수	(1순위) 1. 12.(월) 10:00 ~ 1. 13.(화) 17:00 (2·3순위) 1. 26.(월) 10:00 ~ 1. 27.(화)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BMC청약센터(http://apply.bmc.busan.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청약신청(매입임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주택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의 호실은 전산 추첨에 따라 무작위 배정됩니다. 간편인증(카카오톡, 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인증서)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주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기간 중에는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1순위) 1. 20.(화) 13:00 이후 (2·3순위) 1. 30.(금) 13:0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방법: BMC청약센터(http://apply.bmc.busan.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서류제출대상조회/서류제출] > [서류제출자당첨조회] 신청자 전원에게 발표 안내 SMS를 송부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서류제출	(1순위) 1. 26.(월) 10:00 ~ 1. 27.(화) 17:00 (2·3순위) 2. 4.(수) 10:00 ~ 2. 5.(목)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방법 : BMC청약센터(http://apply.bmc.busan.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서류제출대상조회/서류제출] > [심사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간 내 'BMC청약센터(http://apply.bmc.busan.kr)'를 통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와 신청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필요서류가 누락 된 경우 심사 시 결격 처리되므로 모집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해당서류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접수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로 전화 2회, 문자 1회 발송 후 연락불가 시 탈락 처리됩니다.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안내	개별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 순위별 입주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부모(또는 본인)의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입주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에게는 개별안내 예정으로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 입주자 발표	(1순위) 3월 중 (2·3순위) 5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방법: BMC청약센터(http://apply.bmc.busan.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당첨결과조회] 신청자 전원에게 발표 안내 SMS를 송부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열람	개별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입주자 발표 이후 주택열람을 위해 개별연락 예정이며, 방문 희망일자 등을 협의한 후 신청주택을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열람을 위한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계약 전 주택열람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입주)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개별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자 또는 방문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내하는 부산도시공사 계좌로 계약금(임대보증금의 20%)을 납부 하셔야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구비서류</th></tr> </thead> <tbody> <tr> <td>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td><td> ① 본인 신분증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td></tr> <tr> <td>기타 대리인이 대리 방문할 때</td><td> ① 본인(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③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작성 </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	① 본인 신분증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기타 대리인이 대리 방문할 때	① 본인(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③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작성
구 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	① 본인 신분증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기타 대리인이 대리 방문할 때	① 본인(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③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작성							

※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상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5. 12. 29.)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배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주민등록표 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 발급)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산도시공사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순위별 입주자격 심사 대상 전원이 서명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또는 3순위)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 서명 ※ 부모 무주택 배점 신청 또는 부모 관련 서류 제출 시 본인과 부모 서명, 그 외 본인 서명 - (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신청자 작성

○ 공통 입주자격 확인 제출서류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
대학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첨부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각서(첨부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및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 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으로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해당교육기관 및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순위별 입주자격 및 배점 인정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1순위	<p>수급자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p>지원대상 한부모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p>차상위계층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또는 부모의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2·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란에 서명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등의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배점 인정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등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가구)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가능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2025. 12. 29.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2025980151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 완료하여야 해당 배점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은행 및 청약홈

○ 기타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부모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이혼 시] •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상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내역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및 부모 주민등록표 초본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모두 미등재된 경우] • 신청자 및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5

유의사항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시 입력한 연락처로 추후 SMS 등의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별 신청접수 마감일(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은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부모 범위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 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p>※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및 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에 따른 탈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부산도시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택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대상자에 한해 당첨된 주택만 확인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을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퇴거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 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잔금납부 후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입주 후 관할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모집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 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산도시공사는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주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부산도시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부산도시공사 맞춤임대처(☎ 051-810-1325, 1365, 1338)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2025. 12. 2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년 5월 8일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년 12월 11일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 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 및 자산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 • 토지가액은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함.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함)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자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간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함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구 분	산정방법
기타 자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의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함):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함)
자동차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 분	항 목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공공 일자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임업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어업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 이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구 분	항 목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p>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 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p>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총자산 가액	부동산 가액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 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금융자산가액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예수금 및 수익증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자산 가액	임차 보증금	<p>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선박· 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입목 재산	<p>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정 자료

구 분	항 목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부채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자동차가액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分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 및 자산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 및 자산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 금융기관 등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란에 서명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공적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사업자등록사항		<u>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u>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안내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같은 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부산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한 임대료 전자고지·수납 위탁업체 및 고지서 인쇄 위탁업체,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기금 대출정보 보유기관,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 나. 제공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u>국토교통부장관</u>	<u>주택소유여부 검색,</u> <u>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u>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u>	<u>임대주택 입주자 관리</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세대원수	
<u>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u> <u>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u> <u>원천정보 보유기관</u>	<u>주택, 소득 및 자산,</u> <u>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u>사회보장정보원</u>	<u>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u>거주자 실태조사</u> <u>업무 수탁자</u>	<u>거주자 실태조사</u>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u>입주자 만족도조사</u> <u>업무 수탁자</u>	<u>입주자 만족도 조사</u>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u>청약신청일로부터</u> <u>신청자는 6개월,</u> <u>당첨(예비)자는</u> <u>5년, 계약자는</u> <u>영구</u>
<u>임대료 전자고지·수납</u> <u>위탁업체</u>	<u>임대료 고지,</u> <u>임대료 수납관리</u>	성명, 주소, 계약자번호	
<u>임대료 고지서 인쇄</u> <u>위탁업체</u>	<u>임대료 고지서 발급</u>	성명, 주소, 계약자번호	
<u>한국부동산원,</u> <u>금융결제원</u>	<u>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u> <u>(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u> <u>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u>	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u>우정사업본부</u>	<u>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u> <u>및 각종 안내문 발송</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u>전산관리지정기관</u>	<u>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u> <u>양도·전대 확인</u>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u>주택도시기금 대출정보</u> <u>보유기관</u>	<u>주택도시기금 대출 검색</u>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u>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u>	<u>임대주택 입주자 관리</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세대원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임대인]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학(입학) 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성명:
- 생년월일:
- 대학명:

상기 본인은 현재 휴학 중(입학 전)이나 다음 학기 복학(입학)예정자로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해당연도에 복학(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근로형태 확인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준비생의 직장 재직 여부 확인용)

사업(장) 현황		사업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로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비정규직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단기 또는 임시 고용 <input type="checkbox"/> 채용형 인턴		<input type="checkbox"/> 체험형 인턴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근로	
근로기간		20 . . . ~ 20 . . .			
근로 계약기간		<input type="checkbox"/> 3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주 근로시간		<input type="checkbox"/> 1주 15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신청자가 부산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자 근로형태에 대하여 상기사항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인)
확인자(사용주): (인)

20 년 월 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